북일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북일고등학교

Ⅰ. '교외 체험학습'의 정의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Ⅱ. 시행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6.22.)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2022.1.17.) 해설 및 기재 요령

Ⅲ. 기본 원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칙이 정하는 범위(Ⅳ항 참조)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Ⅳ.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내용

원칙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허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시 -**	비고
연간 15일 이내	**연간 34일 이내 (※ 가정학습 19일 포함)**	**해당 학년도 기준**

○ 정기고사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8시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 가능

단,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4시간) 단위 운영 불가

○ **체험학습형은 연간 최대 15일 허용**

○ 내용

구분	내용
체험학습형	• 가족 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학습형	• 가정학습: 별도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시 한시적 허용**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Ⅴ. 시행 절차

사전 승인	→	실시	→	사후 확인	→	결과 처리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서식1) • 학교장 허가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서식2) 및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출석 인정 • 증빙 자료 학교 보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결재과정(예시)

○ 학생(보호자) 신청서·보고서 제출→담임(k에듀파인 내부결재)→교무부일과→교무부장→교감→교장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담당)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담당) 교사에게 연락

<서식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성 명		학 번	학년 반 번		
기 간	교외체험학습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출 석 인 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 )				
목 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교외 체험 학습 계획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며 학습기간 중 이상 발생시 신속하게 담임교사에게 연락할 것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1. 체험학습의 목적 및 학습계획(일정, 장소,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체험학습 참가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및 승인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를 연락(전화 또는 문자)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서식2>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성 명		학 번	학년 반 번		
기 간	교외체험학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출석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 )				
목 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교외체험학습 내용 ☞ (사진 또는 증빙자료 별지 부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보고서 작성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2. 사진, 입장권, 참가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